

불법복제로부터 저작물보호 시급하다

貸與權 · 賦課金제도 도입, 세미나서 제기돼



허희성씨



전영표씨

최근 저작물의 불법복사 · 복제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복제기기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보호」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지난 9월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문공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정훈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許嬉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씨의 「복제기기의 현황과 저작권보호현황」 주제발표가 있었다.

허씨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했는데, 외국의 경우 ①교육목적일 때에 한해 복사를 허용하되,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도록 하고 ②복사기를 유상으로 설치하여 제3자가 일정한 복사기 이용 수수료만 지급하면 복사물을 작성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법정 허락제도로써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권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며 ③복사기의 제작 · 수입 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관리단체가 이들 업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통계월보를 참고하여 국내 복사기의 연간생산율은 총 15만3천7백대, 1대당 연평균 6만매를 복사한다고 보면 연간 복사물량은 92억매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인구 1인당 연평균 복사매수를 420매로 보면 (1983년 서독에서 조사), 연간

복사물량이 176억매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들 복사물 중 10%를 서적 · 잡지 · 신문 등 저작권보호를 받는 복사물로 보면 연간 약 18억매의 복사물이 저작권 침해됐다고 분석했다.

복제 저작권보호 국내엔 마련돼 있지 않아

이어 허씨는 “복사기의 보급에 따라 현실적인 저작권 침해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할 방법이 우리 저작권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서독의 경우처럼 복사기 판매에 따른 부과금제도와, 학교 · 공공도서관처럼 대량복사 예상기관과 영리적으로 복사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괄계약에 의한 법정 허락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은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부과금제도와 관리단체에 의한 포괄계약제도가 최선의 방법이며, 이런 제도의 도입이 빠를수록 저작권자들의 손실은 그만큼 보상받게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도 부과금제도와 포괄계약방식이 조속히 채용되기를 주장했다.

한편 全泳杓(신구전문대학 인쇄학과) 교수는 「복사기의 발달과 출판물 보호」란 주제발표에서 국내 복사기 생산 · 보급실태와 出協의 무단 복사 등에 대한 단속실적을 밝히고, 아울러 앞으로 복사기에 의한 출판저작물 보호대책의 강구를 촉구했다.

전교수에 의하면 국내에 처음 복사기가 상륙한 것은 1960년경으로, 신도교역주식회사에 의해 미국의 Xerox-914 복사기와 일본의 Ricoh-P4 복사기가 수입됐다는 것.

신도교역은 1964년 자체 생산공장을 가동시켜 국내보급에 주력, 1970년부터는 일본 리코社와 합작, 주식회사 신도리코의 이름으로 연간 1만3천대의 복사기를 생산했다고 전교수는 밝혔다.

그러나 복사기 생산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불법복제물도 증가해, 出協에서는 저작권자나 출판권자로부터 위임받아 무단복제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83년 62건, 84년 185건, 85년 622건, 86년 586건, 87년 1,299건으로 급증하다가 1988년에는 전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5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반원이 전년의 8명에서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9월8일 문공부가 마련한 '복제기기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세미나 전경.

복사 · 복제 행위는 주로 학교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학술서에 많아, 결국 이런 무단복제 행위는 출판사의 제작비회수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전교수는 주장했다.

특히 “우리의 저작권법에서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와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①조사 · 연구를 목적으로 1인 1부에 한해 ②도서관 등에서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절판 등으로 보존용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 내지 보완하여, 출판인이나 저작자가 재산적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租稅적 성격, 설치 · 관리 비용 커 난점

이어 전교수는 저작물 보호에 대한 외국의 실례를 소개했는데, 서독에선 貸與權을 규정하는 저작물에 대해 영리목적이나 공공시설에 의한 대여행위를 한 경우 저작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하도록 규정돼 있고, 영국에서는 1979년 公貸權法을 제정 시행하여 저작권자에게 중앙기금에 의해 보상받을 권리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교수는 또 부과금제도에 대해 서독에서는 85년 저작권법을 개정, 복사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저작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 복제는 그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영리 · 교육 및 직업교육의 시험에 이용할 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 그밖의 경우에는 복제사용료를 내는 부과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복사기 수입업자로부터 복사

성능에 따라 단계적 부과금을 징수하는 機器부과금제도와 학교 · 연구소 · 공공도서관 등 설치장소에 부과하는 운용자부과금제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교수는 저작권법의 합리적 운용과 저작권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저작물 복제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우리의 저작권법도 외국처럼 대여권을 신설하고 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저작재산권의 보호와 출판물의 版面權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독의 기기부과금과 같이 국내 복사기 제조회사로부터 생산대수에 대한 일정률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 둘째, 주로 책을 복사하는 도서관과 대학 주변 복사점에 한해 복사기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를 복사기에 부착하고 이의 관리회사나 관리단체로 하여금 정기검진을 통해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복사부과금은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나 出協 등에 균등히 배분하여 저작자나 출판인을 위한 사업에 공정히 활용해야 한다고 전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나 첫째방법은 租稅적 성격이므로 세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둘째방법은 설치비용과 사무관리비용이 너무 커 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문평씨(한국음악저작권협회평의원회의장)의 「녹음 · 녹화기의 발달과 공연물 보호」, Jukka Liedes(핀란드 교육부 특별자문관)씨의 「복사 및 녹음 · 녹화」, Walter Dillenz씨(오스트리아 저작 · 작곡 · 음악출판자협회법률분과위원장)의 「가정 내 복제에 대한 각국의 보상실태」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었다.

—권정자 기자